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정법주

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호경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5년 5월 30일

나. 회부일자 : 2025년 6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약품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부작용, 오남용, 폐의약품 무단 배출 등 의약품 사용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- 도민이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고, 불용·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취약 계층에 대한 복약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용어 정의, 도지사의 책무 등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나. 계획의 수립 및 시행,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, 재정지원 등을 규정(안 제4조~제6조)

다. 홍보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~제8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의약품은 올바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안전사용 환경조성은 충분히 공익성과 필요성이 있음. 특히 불용·폐의약품의 체계적 회수·처리는 환경오염 예방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음.
- 또한, 복약정보 접근에 취약한 노인층,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내 강화는 보건복지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.

나. 조례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라 의약품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, 본 조례안에서도 이를 준용하고 있어 법체계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음.
- 또한,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행정 사무에 해당하므로 「지방자치법」상 조례 제정의 자율성과 위임근거에도 부합함.
- 조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4조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.
 - 안 제5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.
 - 안 제6조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.

- 안 제7조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8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하여 규정함.
- 그밖에 조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`25. 6. 2.~`25. 6. 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의약품 안전환경 조성 조례안」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, 불용·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와 취약 계층에 대한 복약 안내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려는 것으로, 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의약품 사용량 급증과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과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.
- 본 조례안은 지역 보건안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타당하며, 도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